# ['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술지원 공모사업] Q&A

| 구분 | 질문 | 답변 |
|---|---|---|
| 일반사항 | 보조금 집행 시, 사업 관련 자문이 가능한지? | 보조금 비목은 일반수용비(자문비)로 집행이 가능함. |
| 일반사항 | 참여인력의 참여 비율에 대한 부분 자세한 설명 요청 |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(e나라도움)으로 관리함.<br>국가사업 참여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통상임금의 100%를 초과하지 않도록 참여율을 조정하여 신청해야 함. |
| 일반사항 | 하나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타 보조사업에 대한 중복 신청·참여 가능한가? | 참여기관(업체)는 최대 3개의 보조사업까지 중복 참여 가능.<br>단, 참여인력의 최대 참여율은 10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함(모든 보조사업 및 국가 R&D 참여율의 합은 100% 초과 불가) |
| 일반사항 | 2026년 기술지원 의무화 건축물 대상 150동은 언제 공개되는지? | 법 시행('27.3.9.) 이후, 실제 의무화 대상 공공건축물 공개 가능. |
| 일반사항 | 보조사업 관련하여 주관기관과 공동기관 간 참여비율을 추후에 조정할 수 있는가? |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 간 참여지분율 및 참여 수행기관 변경 불가.<br>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,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 가능. |
| 일반사항 | 보조사업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비목간 보조금 비율을 추후에 조정할 수 있는가? | 보조금 비목 변경(인건비 등)은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통해 가능함.<br>다만, 인건비에 대한 증액(상향 조정)은 불가. |
| 일반사항 |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 수립 시, 세부기준이 언제 나오는지? |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 시행일인 2027년 3월 9일까지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예정. 추후 공개 |
| 일반사항 | 해당 보조사업에서 위탁용역이 가능한가? | 전문공종(전기, 기계설비 등) 사업자와 업무 협력이 필요한 경우,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권장<br>※ 부득이한 경우,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용역 가능 |

| 구분 | 질문 | 답변 |
|---|---|---|
| 과업수행 | 설계지원 부문에 대해 에너지 절약 기술요소를 제안하는 정도인 것인지, 실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인지? | 수행기관은 본 설계사(기본 및 실시설계사)가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 기술요소들을 반영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E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(안)의 목표에너지 절감률을 검증함.<br>※ 실제 설계 업무는 이행기관에서 선정한 본 설계사가 진행 예정. |
| 과업수행 |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의 다수 안이 필요한지? | 목표 에너지 절감률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추진계획(안)을 만들어 이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기술지원의 목표이기 때문에, 필요함.<br>제공받은 이행기관은 내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추진계획(안) 중에서 가장 적합한 추진계획(안) 선정. |
| 과업수행 |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의 승인 주체는? | 추진계획의 최종 승인 주체는 운영기관임.<br>수행기관은 다수의 추진계획(안)을 수립하여 이행기관에 제출.<br>이행기관은 다수의 추진계획(안) 中 1개를 선택하여 운영기관에 제출.<br>운영기관은 제출된 1개의 추진계획(안)을 검토·승인하는 구조.<br>※ 수행기관은 운영기관의 추진계획(안) 승인과 별도로 다수의 추진계획(안) 모두 성과품으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. |
| 과업수행 | 열화상 진단의 경우 '붙임3' 기준에 따라 진행하기 힘든 경우가 많을 텐데,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지? | 과업설명서의 [붙임3] 보고서는 참고용이며, 열화상 측정 방법 및 상세 보고서 양식 등은 운영기관과 협의 후 진행 예정. |
| 과업수행 | 공공건축 기획의 업무에서<br>GR 관련 사항만 고려하면 되는지? | GR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한정.<br>다만, GR 요소에 대한 공사과정에서 연계 추진(개선)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<br>ex) 천장 조명 교체 및 설비공사 시 연계되는 천장공사 등 |

| 구분 | 질문 | 답변 |
|---|---|---|
| 과업수행 | 도면 현행화의 수준은? | 도면 품질 표준화는 추후 진행 예정<br>건축 분야의 경우 벽체의 두께와 단열재 등 기본 정보를 최대한 포함하는 도면 수준.<br>(허가 수준에 준하는 도면으로 예상) |
| 과업수행 | 건물 현장 여건에 따라 도면 현행화 목록 조정 가능한가? | 가능 (다만, 운영기관과 협의가 필수적) |
| 과업수행 | 원격검침 계량의 경우 계측을 위한 계측기의 설치 위치, 시퀀스 등은 설계사가 정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전문사업자의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가? | 필요함.<br>다만, 전문사업자의 검토 및 확인은 운영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전문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예정으로, 신청기관에서 고려할 필요 없음<br>운영기관의 검토 및 확인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, 신청기관은 이에 대한 보완 필요 |
| 과업수행 | 원격검침 계획 시, 열원 용도별·설비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대응 방안은? | 운영기관에서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가이드라인 제공 예정<br>가이드라인 참고하여 대응방안 수립(가이드라인 外 내용은 운영기관과 협의) |
| 제출서류 |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에 대해 상세 설명 요청 | 사업계획서(정성) 작성 시, 15동 전체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, 일정계획, 건축물 유형별·규모별 특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작성 필요 |
| 제출서류 | 샘플보고서 작성 부분에 대해 상세 설명 요청 | 건축물(실제 또는 가상) 1개 동에 대해 작성.<br>샘플보고서 작성 시, 건축물 규모·용도 등을 고려하여 각 과업 단계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1개의 샘플보고서로 작성<br>샘플보고서 작성을 위한 건축물은 조건에 부합하는 가상의 건축물이나 신청기관이 기수행한 실제 건축물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|

| 구분 | 질문 | 답변 |
|---|---|---|
| 정산 | 지자체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미수행 업무가 발생할 경우, 보조금이 반납해야 하는지? | 미수행 업무에 대해서는 반납 예정. |
| 기타 |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추후 이행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(설계, 시공)에 참여 가능한지? | 이행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.<br>실제 이행기관의 내부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되므로, 이행기관(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)에서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하는 부분까지는 운영기관에서 관여 불가. |

※ 기관 용어 정의

총괄기관: 국토교통부

운영기관: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(한국부동산원, 국토안전관리원)

수행기관: 기술지원 보조사업자를 말하며,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으로 구성. 주관기관 中 대표기관을 선정 예정(운영기관별 1개, 총 2개 대표기관)

이행기관: 의무화 대상 공공건축물 소유·관리 기관(중앙·지자체·공공기관 등)